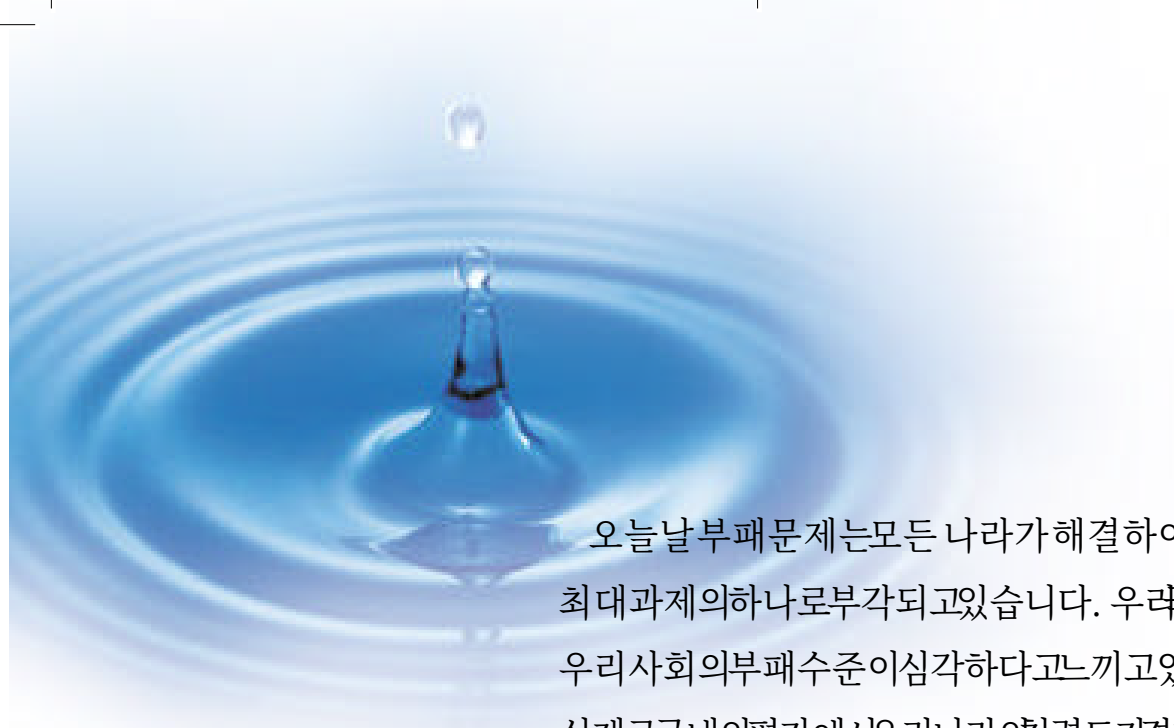




오늘날부패문제는모든 나라가해결하여야할
최대과제의하나로부각되고있습니다. 우리국민도
우리사회의부패수준이심각하다고느끼고있으며,
실제로국내외평가에서우리나라의청렴도가경제력에
비해매우낮은것으로나타나왔습니다.

부패문제는공정한사회건설과선진국으로발돋움
하기위하여반드시 해결해야할과제이자 의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부패문제를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해결하기위하여만들어진기관이바로
부패방지위원회입니다.

부패방지위원회는우리 후손들에게깨끗한사회,
건강한나라, 희망찬미래를물려줄 수 있도록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로미는 부패제로(0) 사회를 상징하는
부패방지위원회 캐릭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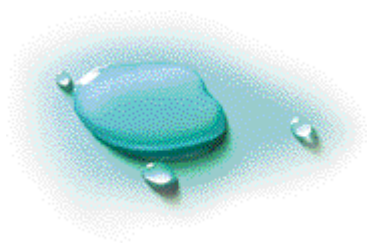


차 례

1. 부패방지위원회는 어떤 기구인가	4
2. 부패방지위원회가 하는 일	6
3.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시행	8
4. 부패란 무엇인가	9
5. 부패행위 신고접수와 처리절차	10
6. 신고자 보호와 보상제도	12
7. 부패방지위원회와 관련기관과의 협력	14
8. 부패행위 신고방법	15

01

부패방지위원회는 어떤 기구인가



부패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발·처벌만이 아니라 제도개선, 이행점검·평가, 교육홍보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개선하는 새로운 시스템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방법으로 부패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패방지법이 만들어지고 이에 따라 2002년 1월 25일 부패방지위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부패방지위원회는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사무를 처리하고 부패 유발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며 자라나는 학생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윤리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기관으로 출범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내부공익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의 출범 그 자체에도 큰 의의가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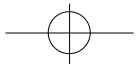
- 위원장을 포함하여 3부에서 추천된 9인으로 구성
 - 대통령 임명 3인(장관급인 위원장 및 차관급인 2인의 상임위원), 국회 및 대법원장 추천 각 3인(비상임위원)
- 위원의 임기보장(3년) 및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 중립적 입장에서 독립적으로 업무수행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 설치
 - (1실, 2국, 2관, 15과) 139명

위원회 기능

-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보상
-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및 제도개선사항의 수립·권고
-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 평가
- 부패방지 교육·홍보계획의 수립·시행
- 비영리 민간단체의 부패방지활동 지원 및 국제협력

조직도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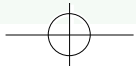
부패방지위원회가 하는 일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를 엄정 처리하고
 - 조사기관의 처리가 미흡할 경우 재조사 요구함
- 특히 고위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는 직접 검찰에 고발하며
 - 잘못 처리된 고위공직자 고발사건에 대하여는 상급법원에 제소하는 재정 신청권 행사
-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하여는 법에서 철저히 보호·보상합니다
 - 신고자가 어떠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분보호를 하며
 - 또한 부패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증대 또는 비용절감이 있을 경우 최고 2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

부패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 부패 신고내용 및 연구조사를 토대로 고질적인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공공기관에 권고하고
 -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부패 취약분야별 업무처리 과정을 심층 분석하여 제도적 미비점 연구 개선
- 제도개선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제도개선에 반영해야 하며 이행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 또한 위원회는 공공기관에 대한 제도개선 이행 여부를 확인·평가합니다.





국민 의식과 관행의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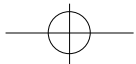
- 위원회는 종합적인 부패 해결을 위해 적발·처벌 및 제도적 개선과 병행하여 국민의 의식과 관행을 개혁하는 업무도 수행합니다.
 - 공직자 스스로 부패를 통제할 수 있도록『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시행
 - 공직자, 어린이, 학생,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부패방지 교육·홍보 실시
 - 시민단체들과 협조하여 사회 각 분야의 뿌리 깊은 부패문화 청산운동 전개

부패방지 국제협력 및 이미지 제고

- 위원회는 국제 투명성기구(T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가 투명성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기구들과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갖고, 우리나라 부패방지 노력을 알려 국제적 이미지를 제고시킵니다.

부패방지 시책수립 및 평가

- 위원회는 국가차원의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부패방지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부패방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 매년 정부기관의 부패실태를 민원인이 직접 평가하는 『공공기관 청렴도』를 측정하여 공표하며
- 각급 공공기관의 부패방지 시책 추진 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 기관의 자발적인 부패방지 노력을 유도합니다.



03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시행



부패방지위원회는 부패방지법 제8조에 근거하여 “공무원의 청렴유지등을 위한 행동강령(약칭 : 공무원행동강령)”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여 2003년 5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정의의

- 공무원행동강령은 공무원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현실적 행위기준을 제시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함과 아울러 주위의 불합리한 청탁이나 유혹에서 벗어나 청렴한 공무원을 보호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주요내용

- 공정한 직무수행 :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 정치인의 압력이나 청탁 또는 수행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충돌하는 경우의 직무 처리절차 마련

- 알선·청탁 등의 금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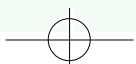
자신의 직위를 이용한 이권 개입,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행위 또는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재산상 거래나 투자행위 금지

- 금품수수 등의 제한 :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선물 또는 향응의 수수 금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의 통지 및 기준을 초과하는 경조금품의 수수 금지(통상적인 관례 범위내 예외 인정)

-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공용물의 사적사용 및 수익금지, 외부강의 등의 신고 등 공과사의 엄격한 구별기준과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 규정



04

부패란 무엇인가

부패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문제이자,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부패(Corruption)의 영어 어원은 라틴어“ Cor(함께) ”와 “ Rupt(파멸하다) ” 합성어로, 대리인(공직자)이 사적이익을 위하여 주인(국민) 몰래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라 할 수 있으며 중국에는 함께 파멸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패방지법이 규정하는“ 부패행위 ”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부패방지법이 정하는“ 부패행위 적용대상 ”

- 전 공공기관과 공직자 모두가 부패행위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 공공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등의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모든 공직유관기관을 포함
 - 공 직 자 :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



05

부패행위 신고접수와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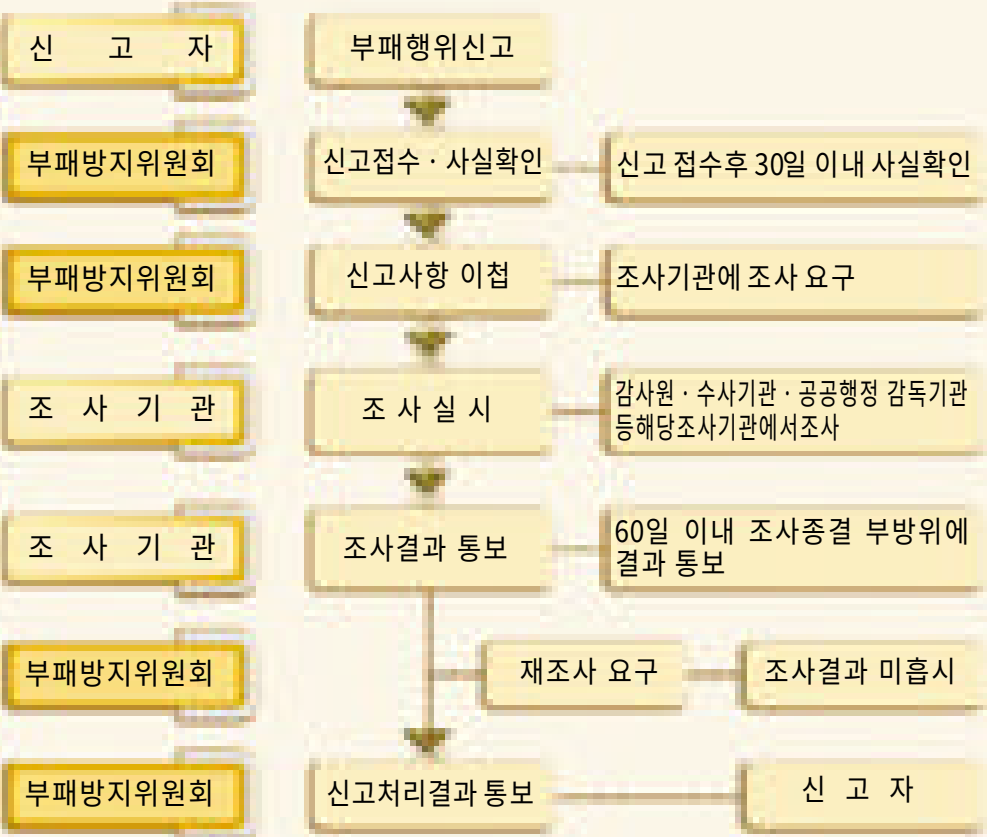
고위공직자* 부패신고사건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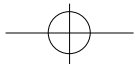


*고위공직자 : 차관급이상 공직자, 특별시장 · 광역시장 및 도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법관 및 검사, 장관급 장교, 국회의원



일반공직자 부패신고사건 처리절차





06

신고자 보호와 보상제도

부패방지위원회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및 보상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회는 신분상 불이익처분 사항에 대해 조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고자 보호

신고자 비밀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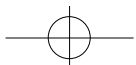
- 보장대상 : 부패행위 신고자 및 협조자
- 보장내용 : 신고자의 동의없는 신분공개 및 암시행위 금지
- 조치사항 : 신고자의 비공개 요구시 위원회 심사과정 및 조사기관 이첩시에 인적사항 기재 생략
- 비밀 공개여부 확인
위원회에서는 신고사건처리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동의없이 신분이 공개된 경우, 경위를 확인하여 징계 및 필요한 조치 강구

신고자 신분보장

- 보장대상 : 부패행위 신고자 및 협조자
- 보장내용 : 신분상 불이익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 전직 및 인사교류
- 보장절차 :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한 자의 요구서 접수(보호보상과) → 위원회 조사 확인 → 심의 · 의결 → 의결사항을 요구자 및 해당기관에통보→ 신분보장 조치
- 조치사항 : 원상회복, 전보 · 전직, 인사교류 등 요구(권고)

신변보호

- 보호대상 : 부패행위 신고자 · 협조자 및 그 친족 또는 동거인
- 보호내용 : 신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 및 신체상의 상해방지 등
- 보호절차 : 요구서 접수 → 심의 · 의결(긴급시 선조치) → 관할 경찰서장에 통지 → 신변안전조치 이행



신고자 보상

보상금 지급

- 지급내용 : 공공기관 수입의 증대 또는 비용을 절감한 경우 대상가액의 2 ~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고 2억원
- 신청절차 : 신청서 제출 → 보상심의위원회 심의 · 의결 → 보상금 지급
※ 보상심의위원회(9명) : 위원회 위원 및 재정경제부, 법무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 공무원 등으로 구성

정부포상

- 부패행위 신고자 중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의 이익을 가져오거나 공익의 증진에 기여한 사람에 대해 포상을 실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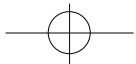
위반자 처벌

신분보장 위반자 징계 및 과태료 부과

- 징 계 :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징계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징계요구를 합니다
- 과태료 :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는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비밀누설자 처벌

- 위원회 전직원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
- 수사 및 조사기관 : 징계권자에게 관련자 징계 요구 또는 형사고발



07

부패방지위원회와 관련기관과의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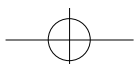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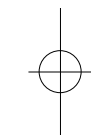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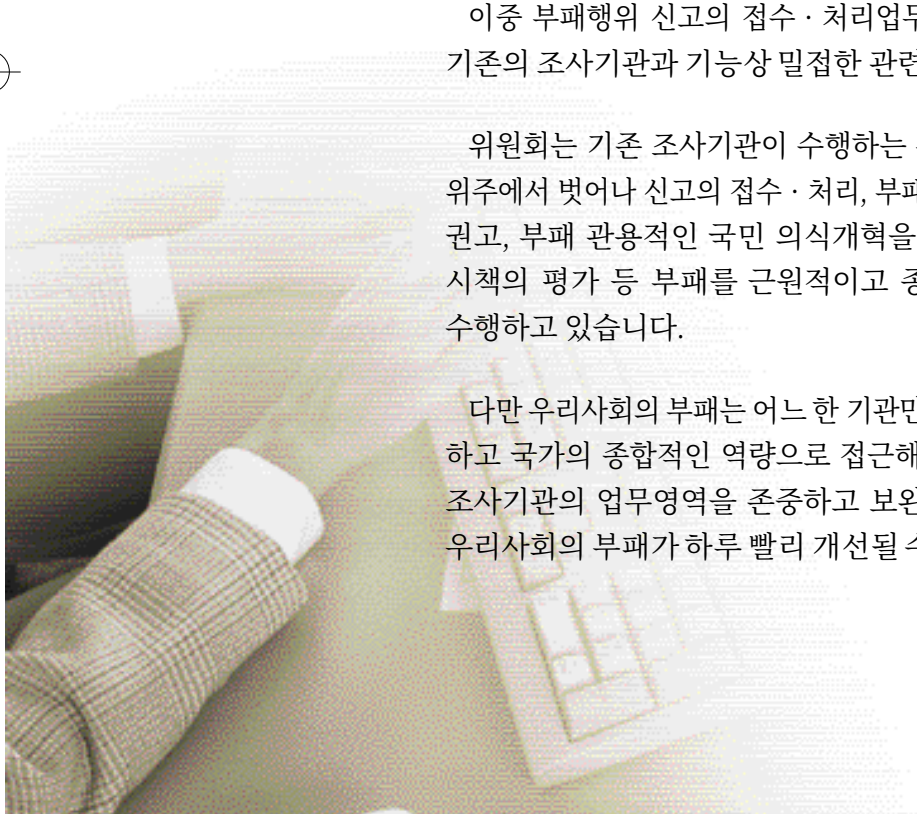
부패방지위원회는

- 부패방지시책의 수립과 제도개선 권고, 교육·홍보 등의 정책기능과
- 부패행위 신고의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등의 집행기능을 수행하며

이중 부패행위 신고의 접수·처리업무와 관련하여 검찰, 감사원등 기존의 조사기관과 기능상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기존 조사기관이 수행하는 부패행위에 대한 적발·처벌 위주에서 벗어나 신고의 접수·처리,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제도개선의 권고, 부패 관용적인 국민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홍보, 부패방지 시책의 평가 등 부패를 근원적이고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사회의 부패는 어느 한 기관만의 노력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고 국가의 종합적인 역량으로 접근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기존 조사기관의 업무영역을 존중하고 보완하면서, 유기적인 협조하에 우리사회의 부패가 하루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08

부패행위 신고방법

누 구라도 언제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직자는 다른 공직자의 부패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은 경우에 부패방지법 제 26조에 의거 부패방지위원회등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패행위 신고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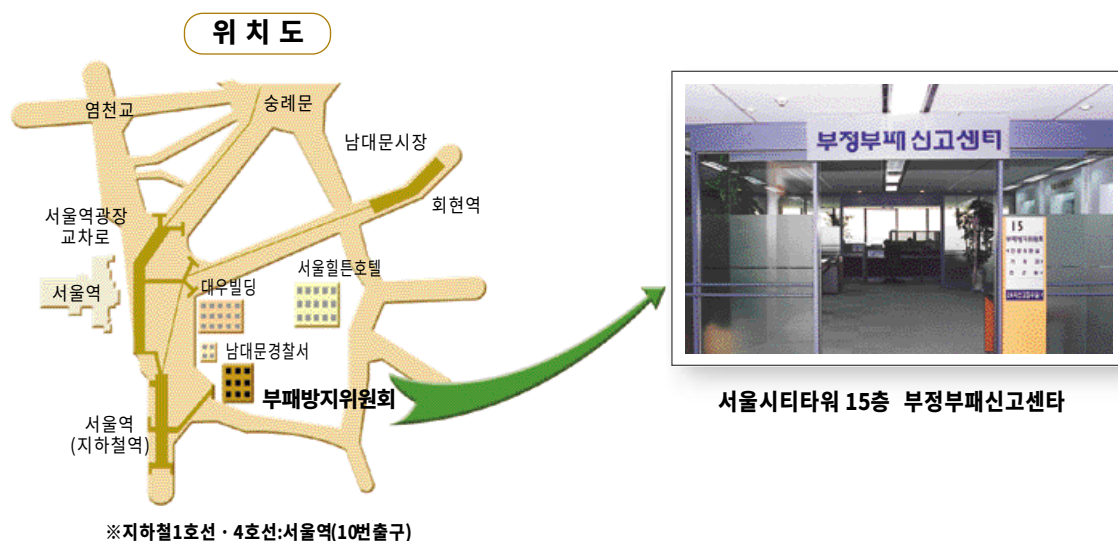
- **직접방문** : 부패방지위원회『부정부패신고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우편·팩스이용** :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분은우편또는팩스를이용하여 신고할수있습니다.
 - 우 편 : 서울특별시중구남대문로5가581 서울시티타워15층『부패방지위원회부정부패신고센터』앞
 - 팩 스 : 02)2126 - 0098
- **인터넷 이용** : 부패방지위원회 홈페이지(www.kicac.go.kr)통해신고할수 있습니다.
- **출장신고접수** : 신고인이 원할 경우 위원회직원이찾아가서 신고를 받습니다.

부패 신고상담

부패신고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국 어디서나 상담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 국번없이 02 - 1398(일 상 고 발)

신고 접수시간

연중무휴 24시간 접수가 가능합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선진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